

연구책임자 퇴직 후 연구과제 참여에 따른 행정절차 안내

1. 퇴직 후 연구책임자로 연구수행을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종전과 동일하게 참여

구 분	내 용
명예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100% 참여시 월 8,500,000원 지급 (근로소득) · 직접비에서 인건비 예산변경 후 지급

2. 퇴직 후 연구책임자로 연구수행을 지원기관에서 불인정 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 변경 :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전임교원으로 변경
- 참여방법 : 공동연구원 (명예교수 또는 책임연구원) 발령

구 분	내 용
명예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100% 참여시 월 8,500,000원 지급 (근로소득)
책임 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100% 참여시 월 6,450,000원 지급 (근로소득) · 발령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 : 연 4회 (2월, 6월, 9월, 12월) 1일자 정기 발령 - 수시 : 매월 1일 · 신청기관 : 공과대학 내 연구비 관리기관 (연구원, 연구소, 센터 등)

- 연금 지급 정지 제도

구분	내 용
전액 지급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에 임용되는 경우 · 선거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취임한 경우(2016. 1. 1.시행) · 국가 전액 출자 ·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 · 출연기관 임직원으로 채용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7,472,000원)이상인 경우
일부 지급 정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금액(근로, 사업, 임대소득)이 전년도 공무원 평균연금월액 이상일 경우 비율에 따라 일부 정지 (2016년 기준: 2,310,000원) <li style="padding-left: 20px;">* 정지액은 연금 수령액의 최고 50%까지 지급 정지 · 정부 전액출자, 출연기관에 재취업해 전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의 1.6배(7,472,000원)미만 소득 발생 시

▶ 공공기관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자·출연 기관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2호)

국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 (34개)	88관광개발주식회사	위더웨이플러스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석유공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국방기술품질원	인천항만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인천항보안공사(주)	한국국방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주)부산항보안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항만공사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주택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투자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코레일유통(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은행	
지방자치 단체가 전액 출자 출연한 기관 (142개)	가평군시설관리공단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대구달성군시설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강릉관광개발공사	대구도시공사	성동구도시관리공단	인천교통공사
	강북구도시관리공단	대구도시철도공사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인천도시공사
	강서구시설관리공단	대구환경공단	속초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강원도개발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수원시시설관리공단	인천환경공단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장수한우지방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대전도시공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전남개발공사
	경기관광공사	대전마케팅공사	안동시시설관리공단	전북개발공사
	경기도도시공사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안산시도시공사	전주시시설관리공단
	경기평택항만공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정선군시설관리공단
	경상남도개발공사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안양시시설관리공단	제주관광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동해시시설관리공단	양산시시설관리공단	제주에너지공사
	경상북도관광공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문경관광진흥공단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종로구시설관리공단
	과천시시설관리공단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양평지방공사	중구시설관리공단
	광명시시설관리공단	부산관광공사	에스에이치공사	창녕군개발공사
	광주광역시광산구시설관리공단	부산광역시마포구도시관리공단	여주시시설관리공단	창녕경륜공단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연천군시설관리공단	창원시시설관리공단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부산도시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광주도시관리공사	부산시설공단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청도공영사업공사
	광주환경공단	부산지방공단스포츠원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청송사과유통공사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용인도시공사	청주시시설관리공단
	구로구시설관리공단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 남구도시관리공단	춘천도시공사
	구리농수산물공사	부천시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구리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울산광역시중구도시관리공단	충북개발공사
	구미시설공단	서울메트로	울산시설공단	통영관광개발공사
	군포시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리공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금천구시설관리공단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의왕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포천시시설관리공단
	김포도시공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천시시설관리공단	포항시시설관리공단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송파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하남도시공사
	남양주도시공사	서울특별시시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대양구시설관리공단	함안지방공사
노원구서비스공단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구시설관리공단	화성도시공사	
단양관광관리공단	서울특별시용산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		
당진항만관광공사	서울특별시은평구시설관리공단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 2016년도 연금지급정지액 조건표(정산정지액)

[전년도 평균연금월액 2,310,000원 가정 / 단위 : 원]

월 급여 (①/12)	총 급여 (①)	근로소득공제 (②)	근로소득금액 (③=①-②) (사업소득금액)	일부정지 적용소득(④) (⑩의 만원 미만 배린 금액)	소득월액 (⑤=④/12)	평균연금월액 (⑥)	초과소득월액 (⑤-⑥)	정지산정액	정지산정액 산출근거
3,233,333	38,800,000	11,070,000	27,730,000	27,730,000	2,310,833	2,310,000	833	249	
3,250,000	39,000,000	11,100,000	27,900,000	27,900,000	2,325,000	2,310,000	15,000	4,500	
3,291,667	39,500,000	11,175,000	28,325,000	28,320,000	2,360,000	2,310,000	50,000	15,000	[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 x 30%
3,333,333	40,000,000	11,250,000	28,750,000	28,750,000	2,395,833	2,310,000	85,833	25,749	
3,750,000	45,000,000	12,000,000	33,000,000	33,000,000	2,750,000	2,310,000	440,000	132,000	
4,166,667	50,000,000	12,250,000	37,750,000	37,750,000	3,145,833	2,310,000	835,833	284,333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 x 40%)
4,583,333	55,000,000	12,500,000	42,500,000	42,500,000	3,541,666	2,310,000	1,231,666	465,833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3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 x 50%)
5,000,000	60,000,000	12,750,000	47,250,000	47,250,000	3,937,500	2,310,000	1,627,500	676,50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6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 x 60%)
6,250,000	75,000,000	13,500,000	61,500,000	61,500,000	5,125,000	2,310,000	2,815,000	1,470,500	
6,500,000	78,000,000	13,650,000	64,350,000	64,350,000	5,362,500	2,310,000	3,052,500	1,636,750	
6,666,667	80,000,000	13,750,000	66,250,000	66,250,000	5,520,833	2,310,000	3,210,833	1,747,583	
7,083,333	85,000,000	14,000,000	71,000,000	71,000,000	5,916,666	2,310,000	3,606,666	2,024,666	
7,333,333	88,000,000	14,150,000	73,850,000	73,850,000	6,154,166	2,310,000	3,844,166	2,190,916	
7,500,000	90,000,000	14,250,000	75,750,000	75,750,000	6,312,500	2,310,000	4,002,500	2,301,750	[200만원 이상] : 9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 x 70%)
7,916,667	95,000,000	14,500,000	80,500,000	80,500,000	6,708,333	2,310,000	4,398,333	2,578,833	
8,333,333	100,000,000	14,750,000	85,250,000	85,250,000	7,104,166	2,310,000	4,794,166	2,855,916	
8,709,583	104,515,000	14,840,300	89,674,700	89,670,000	7,472,500	2,310,000	5,162,500	3,113,750	
8,750,000	105,000,000	14,850,000	90,150,000	90,150,000	7,512,500	2,310,000	5,202,500	3,141,750	
10,000,000	120,000,000	15,150,000	104,850,000	104,850,000	8,737,500	2,310,000	6,427,500	3,999,250	

※ 위 조건표의 연간소득금액은 소득업무에 12개월 종사한 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

※ 연금지급정지액은 연금액의 1/2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산정된 연금지급정지액(월)이 본인 연금월액의 1/2를 넘는 경우에는 연금월액의 1/2까지만 지급정지 합니다.

※ 국가 전액 출연 · 출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6배(7,472,500원) 이상인 경우 연금 전액 정지